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탁자 사후 수익자에 대한 과세규정 명확화〉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70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위탁자 사후 수익자에 대한 과세규정 명확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12. 26.
3. 회부연월일 : 2024. 1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59조 및 제 60조)의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에 관한 과세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연속수익자는 수익권 취득 시점에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귀속 시점이 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이중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수탁자가 해당 연속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조세평등원칙을 실현하고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7조제17항 및 제9조제3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위탁자 사후 수익자에 대한 과세규정 명확화

(1)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의의

“유언대용신탁”이란 「신탁법」 제59조¹⁾에 규정된 것으로, 위탁자가 생존 중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고, 사망 후에는 미리 정한 사후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부여하는 신탁을 의미함.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로 본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유언증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특히, 공정증서 형식의 유언장의 경우 공증이 필요하고, 상속인을 제외하고 2명의 증인이 필요하며, 유언 내용을 변경할 경우 똑같은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해 번거로울 수 있음²⁾에 반해,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맺는다면 공증 절차도 필요없고, 특정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곧바로 유언장의 효력을 갖게 되는 편리함이 있음.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신탁법」 제60조³⁾에 규정된 것으로, 수익자

1)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신탁법」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

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형태의 신탁임.

유언장의 경우 본인 사후에 “아들에게 상속하며, 아들이 사망하면 손주에게 상속한다” 등의 취지로 연속 유증이 불가능하지만, 신탁의 경우는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자칫 자녀의 배우자가 손주에게 돌아갈 뻔까지 쟁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대비해, 자녀와 손주를 각각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로 지정해 두는 방법도 가능함.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① 수익자가 위탁자 사후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그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7항 신설).

또한, 수익권을 취득한 자가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도록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⑯ (생략) <신 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⑯ (현행과 같음) ⑰ 「신탁법」 제59조 및 제60조

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지방세법」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과세) ① ~ ② (생 략)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신 설>	<u>에 따른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의 위탁자 사후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제7항4)을 준용한다.</u> 제9조(비과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7조제17항에 따라 수익권을 취득한 자가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현행 「지방세법」 제7조제7항⁵⁾은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은 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수익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위탁자(피상속인) 사망시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부과됨. ii) 한편,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 취득시(가령, 신탁재산의 부동산 등기 이전시)에 수익자에게 부과됨. iii) 반면,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직접 취득 없이, 그 처분 대금만을 취득할 경우 상속인은 물론 수익자에게도 실질적인 신탁재산의 소유권 취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⁶⁾

이처럼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납부의무 부과시기가 달라지고,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니면서 신탁재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그 처분대금만을 수익하는 경우는 수익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5)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6) 최근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이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음(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단62970 판결)

이에 개정안은 위탁자가 사망 후 수익자가 수익권 취득 시점에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 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고, 수익권 취득 후 신탁관계의 종료로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이중과세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실질적 조세형평을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됨.

[위탁자 사망시 취득세 납부의무에 대한 현행과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수익자가 신탁재산 취득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취득	
취득세 납부 의무자	상속인	수익자	-	수익자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취득세 납부 의무 부과 시기	위탁자 사망시	수익자의 신탁재산 취득시 (부동산 등기시)	-	위탁자 사망 후 수익자 수익권 취득시 ※신탁관계의 종료로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문 제 점	수익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납부 의무부과 시기가 달라지며, 상속인이 아닌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인, 수익자 모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수익자는 수탁자의 동의없이 신탁재산 처분할 수 없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다만, ① 대법원은 신탁수익권은 단지 신탁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⁷⁾하는 점 및 ② 수익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해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체계, 다양한 신탁 상품과의 과세형평성, 신탁업계의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

7)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 (대법원, 2019. 2. 28, 2018두62515)